

## 곡물(녹두) 공급 계약서

계약연번: **SM25-0102**

하기 서명란에 명시한 **대한농산(주)(이하 갑)**과 **천보상사(주)(이하 을)** 간의 곡물(녹두) 공급 계약서를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. 단, 배타적 독점계약이 아님을 명시한다.

### 제 01 조. 계약의 목적

\*1. 갑과 을(이하 양자)은 곡물(녹두)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 02 조. 원산지 증명

“을”은 곡물(녹두)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책임을 지며, “갑”은 책임이 없다.

### 제 03 조. 품질규정

- \*1. 발아율- 녹두를 40~50C 수온에 10 분 불려, **A+:97.5%, A-:95%, B+:93%** 이상 정상이어야 된다.
- \*2. 직경분- 녹두의 얇은 직경기준으로 -3.6mm, -4.0mm, +4.0mm 로 나누어 포장한다. 구분을 **85%** 이상.

### 제 04 조. 계약체결

- \*1. 기준: ①거래는 P/O(purchase order) 연번을 기준으로 한다. 공급자, 생산자, B/L 등 일원화된 기준.  
②수출자에게 주문발주 내는 시점에 을은 갑과 가격, 물량, 원산지 등에 관하여 상의한다.
- \*2. 발주: ①구두체결- 가격, 물량, 원산지 등을 구두로 정하여 약속할 수 있으며, 문자전송을 통해 확인한다.  
②”갑”과 “을”은 가격, 물량, 원산지, 예상납기 등을 명시한 P/O 별 계약서 작성하여, e-mail 로 통지하고 승낙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한다.
- \*3. 계약금지급: ① “갑”은 제 1 항에 거래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며, “을”은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“갑”에게 교부한다.

### 제 05 조. 납품기한

\*1. 물류기간: 페루/45 일, 중국/15 일, 미국/30 일을 기준으로 하며, 납기가 7 일이상 지연될 경우 “을”은 사전에 “갑”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 06 조. 거래량 및 가격

- \*1. P/O 별 1 회 최소 거래량은 22 톤/20GP, 24 톤/40GP 로 한다.
- \*2. 가격은 US\$3.3 으로 하며, 급격한 곡물(녹두)시장 변동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### 제 07 조. 손해배상 등

- \*1. 을의 원인으로 계약위반시 계약금의 2 배(계약금과 배상금)를 갑에게 배상한다.
- \*2. 갑의 원인으로 계약위반시 계약금은 “을”에게 귀속된다.

### 제 08 조.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

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### 제 09 조. 계약기간

- \*1. 발효: 계약서 날인일
- \*2. 해지: 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천재지변, 수입금지 등 법령 및 정책 개정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주문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고, “본계약”은 해지 한다. ②미수.미지급금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서면, email, 문자 통보 30 일 후. ③”갑”과 “을”은 “본 계약”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내지 신고가 없거나 말소되는 경우, 지급정지,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“본 계약”은 자동 해지 되며,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- \*3. 소멸: 마지막 거래 이후 2 년간 거래가 없을 경우, 본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.

### 제 10 조. 분쟁해결: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양자간의 분쟁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른다.

본 계약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날인 후 양자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

제 11 조. 연대보증 및 담보

연대보증: 자필성명, 주민번호, 서명

전화번호:

담보주소:

제 12 조. 서명

갑	대한농산(주) 126-81-*****	을	천보상사(주) 834~81*02977
주소	경기 파주시 LG 산단로 88	주소	인천시 동구 보세로 42 길 7-26
담당	지천명/대표	담당	박석원/대표
email		email	800@smti.kr
날짜	2025.01.02.	날짜	2025.01.02.
서명		서명	